

|   |        |
|---|--------|
| 선 | 기관 의 장 |
| 람 |        |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5-2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5-22호 :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5
- 공 고  
제2025-273호 :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27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설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유통기업의 상생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14조)
- 나. 항이 누락된 표기 수정(안 제2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 : 02-3396-5065, 팩스 : 02-3396-8679, email : [ksj0105@junggu.seoul.kr](mailto:ksj01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부 칙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br>-----<br>-----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생략)                                                                    |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④ (현행 제23조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22호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01.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7호(2021.12.2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7호(2022.07.0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7호(2024.02.2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81호(2024.12.18.)로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84호(2024.12.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 면 적 : 20,350.7㎡ [대지 : 18,953.5㎡, 기반시설(공공청사) : 1,397.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와이디427피에프브이 주식회사 김도남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5년 3월 19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Table with 8 columns: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총 수(층), 높이(m), 용도. Rows include 18,953.5 and 1,397.2.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Table with 5 columns: 공급대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추산액(종후평가액). Rows include 182,821.79 and 2,448,025,000,000.

2) 보류지 및 체비지 시설

Table with 5 columns: 공급대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추산액(종후평가액). Rows include 76,675.22 and 1,850,940,000,000.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Table with 7 columns: 종류, 규모(㎡), 시행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관리청, 종류, 규모(㎡). Includes rows for 공공청사 and 1,397.2.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02-3396-5774)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273호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1.16.)로 정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7호(2021.12.23.)로 정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7호(2022.7.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7호(2024.2.2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7호(2024.08.2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5호(2024.09.1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명칭 :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 면적 : 7,199.9㎡ [정비기반시설 : 366.4㎡]

3)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와이디816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김도남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건축계획 :

- 지상34층/지하9층, 연면적 120,783.0㎡, 업무/근린생활시설

나. 공람기간 : 2025.03.19.(수) ~ 2025.04.02.(수) (14일간)

다.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4)

라.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